
공정거래 CP 효과성평가 운영지침

제 · 개정 일자 : 2025. 7. 24.

제 · 개정 번호 : 01

2023. 11. 1. 제정

2025. 7. 24. 1차개정

남양유업 주식회사

CP 효과성평가 운영지침

[시행 2025.7.24.] [CP운영지침 제5호 2025.7.24. 개정]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 예방 효과 및 CP 운영결과를 점검·평가(이하 “효과성평가”라고 함)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책임과 권한)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부서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CP 운영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 단, 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등 외부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2.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호의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해야한다.
3.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2년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.
4.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과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5.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평가 결과 및 필요한 개선조치 방안을 최고경영자에 보고 해야하며,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
6.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효과성평가를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② 자율준수전담부서(이하 “전담부서”라 함)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담부서는 효과성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,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해야한다.
 2. 전담부서는 효과성평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.
 3. 전담부서는 효과성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가 CP 등급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 해야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CP 효과성평가를 위한 설문 등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3조 (평가 종류)

효과성평가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기 평가 :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효과성평가를 말한다.
2. 외부 평가 : 객관적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 등에 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CP 등급평가 인증
 - 나. 외부 전문기관 의뢰
3. 기타 평가
 - 가. 개인 평가 (임직원 스스로 CP준수의식 평가할 수 있도록 인사 평가지표에 반영)
 - 나. 모니터링 평가 (CP 모니터링시 함께 효과성평가)

제4조 (평가 절차)

- ① 년1회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‘다음년도 CP운영계획’에 연간 효과성평가의 내용을 포함하고, 그 내용에 CP 등급평가 신청여부를 포함한다.

② 정기 평가는 계획수립, 평가준비, 평가실시, 결과검토 순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추진한다.

1. 계획 수립

평가방법·평가자 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진행계획을 수립한다.

2. 평가 준비

가. 평가내용은 CP규정 제30조 2항 각 호를 포함하고, 다음 표의 측정지표를 사용한다.

<표1. 측정지표>

구 분	측정 지표
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- CP에 대한 내부 인식도, 참여도- CP 위반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가 회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- CP 관련 교육성과-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 성과- CP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성과- 내부제보 시스템의 운영 성과- 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과련 기준의 적절성

CP가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내용	-. CP 운영이 기업의 핵심 경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-. CP 운영을 위해 구축된 조직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절성 여부 -. CP 관련 인력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 여부
---	---

나. 평가에 필요한 설문지 및 점검표를 작성한다.

3. 평가 실시

가. 설문 조사방식 (임직원, 협력업체, 대리점 대상으로 CP 효과성 측정)

나. 점검표 점검방식 (CP부서의 교육·내부감시체계 등 CP 프로그램 운영실적)

4. 결과 검토 : 결과를 검토하고 CP운영 취약점을 식별한다.

② 외부 평가는 해당기관의 절차에 따른다.

③ 개인 평가는 인사평가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거쳐 시행 및 운영한다.

제5조 (개선방안 검토 및 결과 보고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효과성평가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, CP관련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.
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을 독립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.

제6조 (개선 추진)

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통지를 바탕으로 필요사항의 개선을 추진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지침은 2023. 11. 1.부터 시행한다.

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.